

분뇨수집·운반업 [] 허가신청서
[] 변경신고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7일
------	-----	---------

신청· 신고인	상호(명칭)	
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
	주소 (전화번호:)	

사무실 소재지 (전화번호:)

차고 소재지

변경내용

「하수도법」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(신고)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신고인)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1.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.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.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	수수료 허가: 30,000원 변경: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2.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1. 신청을 하여야 하는 대상
 - 분뇨수집·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
2.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
 - 가. 상호의 변경
 - 나. 운반차량의 변경
 - 다. 기술인력의 변경
 - 라. 대표자의 변경
 - 마. 사무실의 변경
3.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
 - 가.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뇨 수집·운반 영업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.
 - 나.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.

처리절차

